제907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수수료, 지정심사, 책임보험 가입 등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4조, 제16조,제17조의2, 2.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신설)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지정, 안전성검사 및 결과서 발급, 표시 등을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제56조의2,제56조의3,제57조,제58조,제59조,별표23, 제55조의6	1.비중요 2.비중요
2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신설)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기술기준) 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 전체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실외이동로봇 운영자의 책임보험 가입(신설) ㅇ (책임보험 등의 가입 및 갱신시점)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만료일 전날까지 갱신 ㅇ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등으로 배상하는 보험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의3 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신설) ㅇ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함 ㅇ (지정취소시에 지정서의 반납)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하도록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2, 별표1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의 요건 및 인증 세부사항(신설) ㅇ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의무·지정취소)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업무 내용 및 절차,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ㅇ (제조업자의 안전(변경)인증 신청·의무·인증취소) 제조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실외이동로봇 구조 및 운영 설명서, 설계도면 및 부품 명세표, 운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또한, 안전인증 관련 위반사항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등 행정제재 가능 ㅇ (실외이동로봇의 임시운행확인 등)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도 등에서 임시운행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동행하여 서류심사에서 적합함을 확인받고, 임시운행의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여야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제7조의4,제7조의5,제7조의6,제7조의7, 제7조의8,제7조의9,제7조의10,제7조의11,제7조의12, 제7조의13,별표2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필요한 투자금액 요건(신설) ㅇ 「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ㅇ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을 각각 100억 원과 50억 원으로 설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 2.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및 전환의 통지(신설) ㅇ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ㅇ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9 3.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변경 보고, 공시 및 그 시한(신설) ㅇ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이 변경되는 경우 ①중기부에 보고, ②본점 및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규정하면서 ③1개월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기한을 설정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0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 절차(신설) ㅇ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자가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될 서면을 규정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1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신설)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체계 신설 – 경기도를 기점으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경기공공버스)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M버스)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평가를 준수하고,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을 의무를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의약품 관련 신청 절차 내 제출 자료 정비(신설) ㅇ 임상시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자료 추가 -임상시험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 소견서를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규정 ㅇ CITES 의약품 수입시 제출자료 추가 -CITES 수입 허가 신청 시, 재수출증명서 사본(재수출일 경우) '사용계획서', 수입 위·수탁계약서(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위탁받은 경우)를 제출 자료에 추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1조 2.의약품등 표시 사항 정비(신설) ㅇ 시·청각 장애인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방법 및 기준 등 신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방법 및 기준을 정함 ㅇ 의약외품 용기 표시사항 추가(저장방법)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등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외품에 대하여 저장방법 표시 의무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의2,제74조, 제75조의2	1.비중요 2.비중요